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하여 본부 정원 5명(8급 5명) 및 소속기관 정원 2명(8급 2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조정(본부 7급 5명, 소속기관 7급 2명) 하면서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중점조사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가맹거래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15일까지에서 2027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22.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0000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제2항 중 “조사총괄담당관”을 “조사총괄담당관·중점조사팀”으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를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중점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로 한다.

제6조의3 제3항 제9호를 삭제하고, 동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점조사팀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총리령 제1532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제1항 중 “2024년 3월 15일까지”를 “2027년 3월 15일까지”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484”를 “4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81”를 “48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29”를 “34”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22”를 “16”으로 한다.

별표 2의2중 총계 “484”를 “4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81”를 “48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29”를 “34”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21”를 “15”로 한다.

별표 3 중 행정주사보 “39”를 “41”로 하고, 행정서기 “12”를 “10”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행정주사보 “39”를 “41”로 하고, 행정서기 “11”를 “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중점조사팀은 202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중점조사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조사총괄담당관이 분장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조사관리관) ① 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6조의3(조사관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사관리관 밑에 <u>조사총괄담당관</u> 을 두며, 조사총괄담당관은 <u>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u> 보한다.	② ----- <u>조사총괄담당관·중점조사팀을</u> ----- - <u>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중점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u> -----.
③ 조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	③ (현행과 같음)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u>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u>	<u><삭 제></u>
10. ~ 14. (생략)	10. ~ 14.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u>중점조사팀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하여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u>

부 칙 <총리령 제1532호, 2019.3.28.>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가맹거래조사팀은 <u>2024년 3월 15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2027년 3월 15일까지 -----. ② (생 략) 부 칙 <총리령 제000호, 2024.2.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중점조사팀은 <u>2027년 2월 28일까지</u>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중점조사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조사총괄담당관이 분장한다.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4</u>	<u>483</u>	-1
일반직 계	<u>481</u>	<u>480</u>	-1
·	·	·	
·	·	·	
행정주사보	<u>29</u>	<u>34</u>	+5
·	·	·	
·	·	·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u>22</u>	<u>16</u>	-6
·	·	·	
·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2의2]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84</u>	<u>483</u>	-1
일반직 계	<u>481</u>	<u>480</u>	-1
.	.	.	
.	.	.	
행정주사보	<u>29</u>	<u>34</u>	+5
.	.	.	
.	.	.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u>21</u>	<u>15</u>	-6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			<u>39</u>	<u>41</u>	+2
	•		•	•	
	•		•	•	
행정서기			<u>12</u>	<u>10</u>	-2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의2]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보			<u>39</u>	<u>41</u>	+2
	•		•	•	
	•		•	•	
행정서기			<u>11</u>	<u>9</u>	-2